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
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이에
발령한다.

2026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

김 양 리



훈 령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규정 제30호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이에 발령한다.

2026년 5월 4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회의장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작성·발간·공개·보존·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의록 구분) 회의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존회의록: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2. 비공개회의록: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3. 임시전자회의록: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에 공개하되 복사를 제한한 회의록
4. 전자회의록: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·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한 회의록

제3조(회의록의 발행) 회의록은 보존회의록, 임시전자회의록 및 전자회의록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 비공개회의록은 보존회의록에 게재하여 발행한다.

제4조(회의록의 작성) 회의록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」(이하

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) 제40조 및 제59조에 따라 작성한다. 다만, 회의록 작성의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」로 정한다.

제5조(회의록의 공개) ① 임시전자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한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한다.

② 임시전자회의록을 게재한 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.

③ 전자회의록은 임시전자회의록의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한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한다.

④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회의록의 보존 및 열람)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서명·날인을 받아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.

②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열람 시 의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.

③ 비공개회의록은 의장의 허가 없이 촬영 또는 복사를 할 수 없다.

제7조(발언 게재 요구)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 게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을 회의록 부록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참고문서 등의 게재)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록 부록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회의 내용이나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참고자료에 한한다.

제9조(자구정정) ① 의원·공무원 등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자구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하게 할 수 있다.

② 자구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.

1. 법조문·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
2.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
3.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4.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

③ 자구정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회의록에 반영하고 보존회의록에는 정정하여 게재한다.

제10조(회의록 원고의 열람·복사) 임시전자회의록 원고를 열람·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의장은 회의규칙 제44조제4항 등을 고려하여 열람·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녹음) 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.

② 회의 녹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료제출) 제8조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에 게재를 허가한 자료는 게재를 요구한 의원이 의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실명 기록 원칙) 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한 의원, 단체장, 관계공무원, 증인 및 참고인 등의 발언자는 실명으로 기록한다.

② 발언자는 직위와 성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다.

③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을 발언 중 언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준에

따라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14조(비실명 처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1. 민원인
2. 일반 주민
3. 인사 관련 언급 대상자
4. 감사·조사 관련자
5.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
6.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
7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부분을 미기재로 처리하거나 “○○○”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.

제15조(관례적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: 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]

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

(제6조 2항 관련)

제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임시회 · 정례회)

제 차 본회의(년 월 일)

제 차 _____위원회(년 월 일)

보존회의록 중 배부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

열람을 허가받은 의원은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
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발언 게재 신청서

(제7조 관련)

제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임시회 · 정례회)

제 차 본회의(년 월 일)

제 차 _____위원회(년 월 일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발언 게재를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①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: 참고문서 등의 게재 신청서]

참고문서 등의 게재 신청서

(제8조 관련)

제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임시회·정례회)

제 차 본회의(년 월 일)

제 차 _____위원회(년 월 일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참고문서 등의 게재를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①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

임시전자회의록 열람·복사 신청서

(제10조 관련)

제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임시회·정례회)

제 차 본회의(년 월 일)

제 차 _____위원회(년 월 일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아래 회의록을 열람·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①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

회의록 녹음 복사 신청서

(제11조 관련)

제 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(임시회·정례회)

제 차 본회의(년 월 일)

제 차 _____위원회(년 월 일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 회의록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